한 국 제 약 바 이 오 협 회

Korea Pharmaceutical and Bio-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

우 06666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 / 전화 02-6301-2169 / 전송 02-6499-2134 / sjh@kpbma.or.kr

문서번호: 제약바이오정책팀-2024-02072

시행일자: 2024-09-19(목)

수 신: 회원각위

참 조: 개발 및 허가 부서장

제 목: 「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알림

- 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6483(2024.9.13) 관련입니다.
- 2. 「약사법」제23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병용금기 성분 등을 지정하는 「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의 일부개정고시(안)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 드리니,
- 3. 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'24.9.26.(목)까지 제약바이오 정책팀(policy@kpbma.or.kr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4. 아울러, 동 개정(안)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> 법령/자료 > 입법/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「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안 1부.
 - 2. 검토의견서(양식) 1부. 끝.

한 국 제 약 바 이 오 협 회



※ 이 문서는 협회 회원사에 한해 홈페이지(www.kpbma.or.kr) '공지사항'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